

파주시청 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0

제출년월일 : 1997. 4.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법률로 되어 있던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파주시조례로 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가.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 읍.면.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함.
- 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 등으로 규정함.
- 다.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을 읍.면.동별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라.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파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2)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동별 여건,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의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지급과 교육기회의 제공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1)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보궐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임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2.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비밀누설 및 품위를 손상 시켰을 때
3. 지도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 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 관련)

(앞 면)	(단 위 : c m)	(뒤 т 면)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② ③ ④ 동	0.3 1 4 8.1 0.75 0.75 1 0.3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 함. ⑤파주시장(인) 이증을 주우신 분 은 가까운 우체통 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0.3</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1.7</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3.2</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0.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5.5</td> </tr> </table>			0.3	1.7	3.2	0.3	5.5			
0.3	1.7	3.2	0.3							
5.5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 ①사진 (4.9cm × 4cm)
- ②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 ③성명
- ④소속기관명
- ⑤철인 (발급기관의 철인)
-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조하여야 한다.

第17條 (青少年的 달) 青少年的 能動的이고 自主的인 主人意識을 鼓吹하고, 青少年育成등을 위한 國民의 參與雲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매년 5月을 青少年的 달로 한다.

第3章 青少年修鍊活動의 지원등

第18條 (修鍊거리의 開發)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거리를 그 이용대상 및 年齡과 利用場所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分野別로 均衡있게 開發·普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거리의 開發·普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 (青少年指導者の 養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指導者の 養成과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및 ③削除 <95·12·29>

第20條 (青少年指導士) ①文化體育部長官은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士 養成機關에서 소정의 課程을 履修하고 檢定에 合格한 者에게 青少年指導士의 資格을 부여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青少年指導士가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
5.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③青少年指導士의 等級, 資格基準, 履修課程, 資格檢定, 研修, 資格證의 交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2·29)

第20條의2 (青少年指導士 養成機關) ①文化體育部長官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士의 養成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밖에 의하여 青少年團體·大學등을 青少年指導士 養成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 70)

②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士 養成機關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發하는 條에 의하여 그 養成에 必要한 經費를 負擔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21條 (青少年指導士의 配置 등) ①修鍊施設 및 青少年團體는 青少年의 健全한 修鍊活動을 指導하게 하기 위하여 青少年指導士를 配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士의 配置對象 및 配置基準은 文化體育部令으로 定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施設 또는 青少年團體등에서 自願하여 青少年指導를 行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95.12.29)

第22條 (青少年指導委員) ①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青少年의 指導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青少年指導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委員의 資格・委嘱節次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條例로 定한다. (改正 95.12.29)

第23條 (青少年團體의 육성・지원 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團體의 組織과 活動에 必要한 行政的인 支援을 할 수 있으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등에 必要한 經費의 一部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青少年團體의 施設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産을 出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등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4條 (收益事業) ①青少年團體는 定款이 定하는 條에 의하여 認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修鍊活動과 關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의 범위, 收益金의 사용등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5條 (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 ①青少年團體는 青少年育成등을 위한 다음 各款의 活動등을 하기 위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1. 會員團體가 行하는 事業과 活動에 對한 협조・지원

(주 70)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치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청장, 출장소장 포함)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 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 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 실태· 지도 및 정화활동

6. 국민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등

(2)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
· 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이내
· 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
· 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 6조 (증표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
· 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 은 별표와 같다.

제 7조 (필요경비등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
· 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 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시·군·구,
· 시·도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세각 및 기재사항 (제7조관련)

(앞면)	(단위: cm)	(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⑤ ② ③ ④ ○ ○ 읍면동	0.3 1 4 0.75 0.75 1 0.3 8.1 4.9×7.5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 한 ⑥ (인) 이 증을 주유신 분은 가까운 부처중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0.3 1.7</td> <td style="width: 50%;">3.2 0.3</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5.5</td> </tr> </table>	0.3 1.7	3.2 0.3	5.5	
0.3 1.7	3.2 0.3					
5.5						

- (비 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 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칸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사진 (4.9cm×4cm)
 - ②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 ③성명
 - ④소속기관명
 -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